

2025. 2. 28.(금) 11시  
남양주시청 2층 여유당



# 2025년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총회

남양주시체육회 창립 30주년  
시민과 함께한 30년



# 목 차

<input type="checkbox"/> 인정단체 가입 승인 결과보고	.....	1p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 결과보고	.....	7p
<input type="checkbox"/> 2024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안) 심의의결	.....	11p
1. 2024년 사업결과	.....	15p
2. 2024년 수입·지출 결산(안)	.....	37p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심의·의결	.....	61p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안) 심의·의결	.....	99p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체육회 감사 선임(안) 심의·의결	.....	103p

# **인정단체 가입 승인 결과 보고**

## 부의안

의안번호	제1호	안전 종류	<input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고사항	
전 명	인정단체 가입 승인 결과 보고	제 안 자	사무국장	

1. 의결주문 : 남양주시체육회 인정단체로 가입에 대한 보고입니다.

2. 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2조 제6호

3. 제안사유 : 체육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인정단체로 가입 승인된 스쿼시협회에 대해서 가입 승인 보고 하고자 합니다.

#### 4. 주요골자

- 가입승인일 : 2025. 2. 7.(금)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이사회
- 단체 현황

등 급	단체명	회 장	임원현황	단체현황	체육회 활동 이력
인정단체	스쿼시협회	이정철	총 13명	6개 클럽 92명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스쿼시 여자 18세이하부 단체전 우승

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 인정단체 가입 승인 결과 보고


## 1 개요

- 종 목 명 : 스쿼시협회
- 등    급 : 인정단체 \*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정회원 단체
- 가입승인일 : 2025. 2. 7.(금) /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이사회

## 2 종목소개

- 스쿼시 종목은 탁구와 테니스를 결합한 종목으로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는 게임이며 단체, 개인 운동이 가능하며,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 3 회장현황

	성    명	이 정 철	출생년도	1966년
	거 주 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직    업	전기시설업체 임원		
	임원현황	총 13명(회장 1명, 부회장 3명, 전무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단체현황	6개 클럽 92명		

## 4 주요 활동 사항

-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스쿼시 여자 18세 이하부 단체전 우승(임수아, 조아연)
- 관내 학교운동부 현황(1개소) : 오남고등학교(고1 2명, 고2 1명, 고3 1명)

## 5 임원 및 대의원 명단

### ○ 임원 명단

연번	직 책	성 명	출생연도	성 별	거주지
1	회 장	이 * 철	1966년생	남	평내동
2	부 회 장	이 * 열	1968년생	남	진접읍
3	부 회 장	박 * 영	1976년생	여	호평동
4	부 회 장	오 *	1968년생	남	호평동
5	감 사	황 * 수	1980년생	남	진접읍
6	전무이사	이 * 욱	1971년생	남	포천시 소흘읍 (관내 직장인)
7	이 사	박 * 이	1989년생	여	진접읍
8	이 사	조 * 국	1982년생	남	평내동
9	이 사	조 * 리	1981년생	여	다산동
10	이 사	진 * 형	1980년생	남	진접읍
11	이 사	가 * 현	1995년생	남	포천시 내촌면 (관내 직장인)
12	이 사	이 * 숙	1981년생	여	진접읍
13	이 사	김 * 환	1996년생	남	오남읍

### ○ 대의원 명단

연번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거주지
1	대 의 원	서 * 원	1980년생	남	진접읍
2	대 의 원	최 * 규	1977년생	남	진접읍
3	대 의 원	차 * 광	1977년생	남	가평군 (관내 직장인)
4	대 의 원	박 * 식	1975년생	남	호평동
5	대 의 원	권 * 호	1966년생	남	호평동
6	대 의 원	임 * 식	1970년생	남	도농동

#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 결과보고**

## 부의안

의안번호	제2호	안전 종류	<input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고사항	
건 명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 결과 보고	제 안 자	사무국장	

1. 의결주문 :

2024년도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 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입니다.

2. 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2조 제4호

3. 제안사유 : 정관에 따라 2024년 정기총회 시 위임 받은 임원 선임에 대한 보고입니다.

4. 주요골자

- 위 임 일 : 2024. 2. 27.(화)
- 선임임원 : 총 12명(부회장 2명, 이사 10명)
- 임 기 : 선임 시부터 ~ 2027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 결과 보고

◇ 2024.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총회(24.02.27.)에서 위임 받은 임원에 대한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 1 개요

○ 위 임 일 : 2024. 2. 27.(화)

- 2024.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총회 제3호 안건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안)”

○ 임 기 : 선임 시부터 ~ 2027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 2 선임결과

구 분	총 계	부 회 장	이 사	비 고
인 원	12명	2명	10명	

부회장		이 사			
강신관	하기주	이낙구	김인태	조택연	김춘재
					
신화건설대표	대한TFS 행정 사무소 대표	민준건설대표	자영업	(주)제이엘컴퍼니 대표	다스대표
이 사					
이영선	윤용	오한근	현규진	원은주	김성태
					
kb국민은행 여의도 본부장	머슬데몬 피티 샵 대표	제일측량 설계 사무소 이사	k-sport company 대표	신한금융플러스 대표	데일텍 대표이사

**2024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안)**  
**심의·의결**

## 부의안

의안번호	제3호	안전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건 명	2024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 의결주문 :**

2024년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2조 제5호

**3. 제안사유 :**

2024년 체육회 사업성과 보고 및 수입·지출 결산(안)의 적정여부 심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계획적인 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2024년 사업결과
  - 시장기 체육대회 등 관내 대회 개최 및 회원단체·임원 워크숍 개최를 통한 남양주시체육회 결속력 강화
- 2024년 수입·지출 결산(안)

(단위 : 원)

구 분		수입액	집행액	집행잔액
<b>합 계</b>		<b>4,913,266,909</b>	<b>4,263,517,971</b>	<b>649,748,938</b>
1	시 비 보 조 금	3,114,533,000	2,964,056,646	150,476,354
2	기 금	92,111,000	90,353,550	1,757,450
3	국 비 보 조 금	67,928,000	63,482,000	4,446,000
4	도 비 보 조 금	237,269,000	213,256,270	24,012,730
5	국 도 시 비 보 조 금	377,376,000	304,521,975	72,854,025
6	도 시 비 보 조 금	14,256,000	10,208,400	4,047,600
7	도 시 교 육 청 비 보 조 금	122,540,000	110,645,300	11,894,700
8	시 교 육 청 비 보 조 금	280,000,000	229,849,660	50,150,340
9	이 사 회 비 사 업	322,114,392	140,808,280	181,306,112
10	회 원 단 체 회 비 사 업	68,331,243	55,971,230	12,360,013
11	체 육 꿈 나 무 육 성 기 금 사 업	61,349,719	35,000,000	26,349,719
12	G-스�포츠클럽 종목별 회비사업	33,100,000	15,869,060	17,230,940
13	기 부 금 사 업	69,264,567	29,495,600	39,768,967
14	출 연 금 ( 기 본 재 산 )	50,093,988	0	50,093,988
15	후 원 금	3,000,000	0	3,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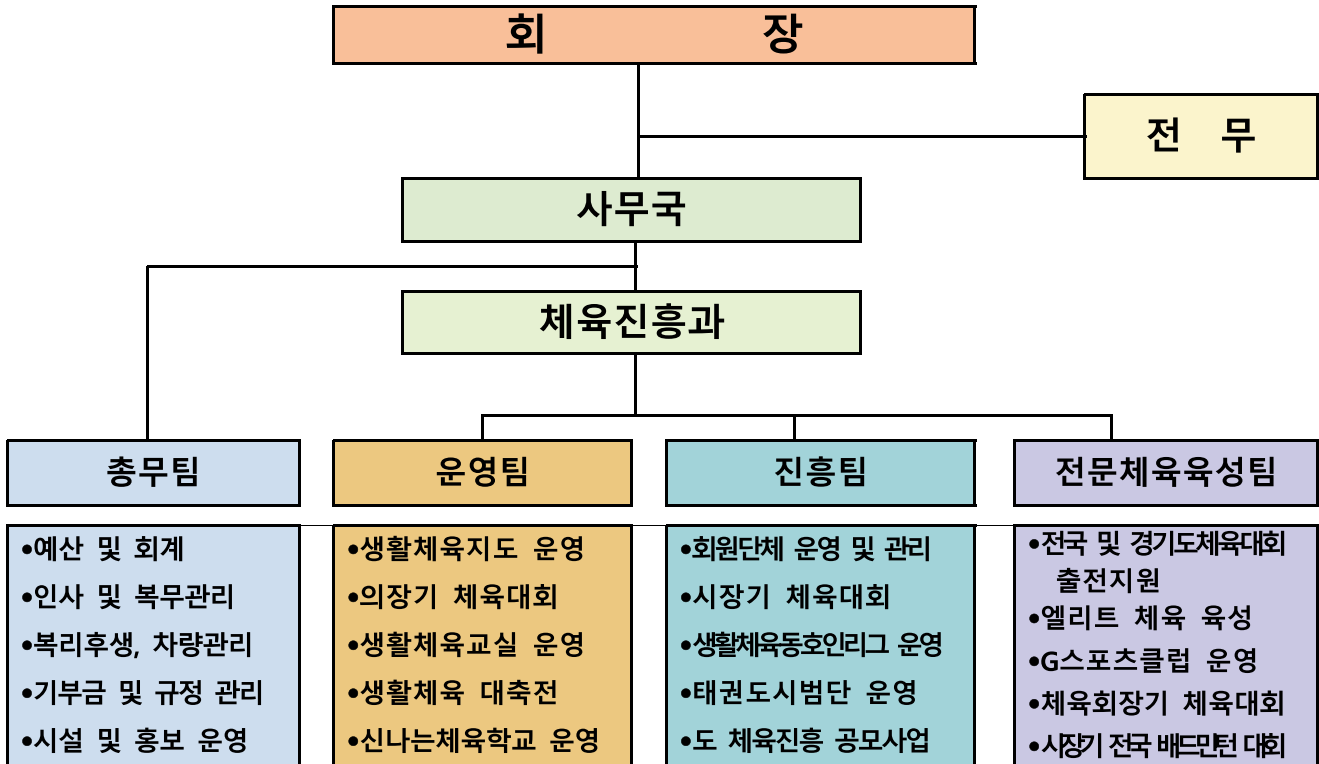
**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 2024년 남양주시체육회 사업결과

시민과 함께한 30년

# 일반 현황

## 1 조직 및 업무현황



## 2 직원현황

○ 정 원 : 29명 / 현원 28명

구 분	계	전 무	국 장	과 장	팀 장	사무직	지도자	기능직
정 원	29명	1명	1명	1명	4명	9명	12명	1명
현 원	28명	1명	1명	1명	4명	9명	11명	1명

## 3 임원현황

○ 정 원 : 현원 74명

구 분	계	회 장	부회장	이 사	감 사
정 원	79명	1명	14명	61명	3명
현 원	74명	1명	14명	56명	3명

(이사회 기능) 사업계획 및 예산, 규정 제·개정 등 심의

## 4 회원단체 현황

### ○ 총괄표

구 분	계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관리단체
합 계	67개	61개	-	5개	1개
종목단체	51개	45개	-	5개	1개
읍·면·동체육회	16개	16개	-	-	-

### ○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검도회	게이트볼협회	걷기연맹	골프협회	국학기공협회
궁도협회	그라운드골프협회	농구협회	당구연맹	댄스스포츠연맹
드론항공협회	배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보디빌딩협회	빙상연맹
복싱협회	볼링협회	바둑협회	사격연맹	산악연맹
승마협회	수상스키웨이크 보드협회	스키협회	씨름협회	소프트테니스협회
수영연맹	야구소프트볼협회	우슈협회	육상연맹	유도회
족구협회	체조협회	축구협회	킥복싱협회	탁구협회
테니스협회	태권도협회	파크골프협회	패러글라이딩 협회	피구연맹
합기도협회	해동검도협회	주짓수회	수중핀수영협회	자전거연맹
트리클라이밍협회 (인정단체)	줄넘기협회 (인정단체)	에어로빅합합협회 (인정단체)	브리지협회 (인정단체)	스쿼시협회 (인정단체)
밸리댄스협회 (관리단체)	와부읍체육회	진접읍체육회	화도읍체육회	진건읍체육회
오남읍체육회	퇴계원읍체육회	별내면체육회	수동면체육회	조안면체육회
호평동체육회	평내동체육회	금곡동체육회	양정동체육회	다산1동체육회
다산2동체육회	별내동체육회			

(총회기능) 본회의 해산 및 정관, 정회원단체의 가입,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심의

## 2024년 체육회 사업성과

### 1 2024.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이사회

- 일 시 : 2024. 2. 2.(금) 16:30
- 장 소 : 다산동 웨딩라포엠
- 참석인원 : 48명(회장 1명, 부회장 8명, 이사 39명)
- 주요내용 : 2024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제 규정 개정 등



### 2 2025.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총회

- 일 시 : 2024. 2. 27.(화) 11시
- 장 소 : 남양주시청 2층 여유당
- 참석인원 : 39명(종목단체 29명, 읍면동체육회 10명)
- 주요내용 : 2023년 결산보고, 임원 선임 등



### 3 남양주시체육회 회원단체 워크숍

- 기 간 : 2024. 6. 4.(화) ~ 6.(목)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참여인원 : 회원단체 회장 및 실무자 85명
- 주요내용 : 경기도체육대회 해단식, 제2회 임시총회, 화합의 시간 등



#### 4 읍면동체육회장 정담회

- 일 시 : 2024. 7. 19.(금)
- 장 소 : 남양주시 시청 여유당
- 참여인원 : 읍면동체육회장 14명



#### 5 남양주시체육회 이사회 워크숍

- 기 간 : 2024. 11. 15.(금) ~ 19.(화) / 3박 5일
- 장 소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참여인원 : 43명
- 주요내용 : 스포츠 선진지(체육시설 등) 및 주요명소 탐방, 만찬 등



#### 6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 기 간 : 2024. 1월 ~ 12월(연중)
- 참여인원 : 4개 종목 6개반 총 39명
- 주요내용 : 총 1,278회 훈련 진행(누적인원 7,640명 참여)
- 사업성과 : 24개 대회 출전 12개 대회 입상(금 2개, 은 5개, 동 5개)





## 7 관리단체 지정 해제

- 지정해제일 : 2024. 10. 25.(금) / 남양주시체육회 제2회 임시이사회
- 지정해제 종목 : 바둑, 씨름, 스키, 동계스키 \* 미 해제 단체 : 밸리댄스
- 회장 현황

바둑협회(정회원)			씨름협회(정회원)		
	성명	목이균		성명	하기주
	출생연도	1950년생		출생연도	1964년생
	거주지	다산동		거주지	평내동
	직업	-		직업	대한TFS행정사사무소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정회원)			스키협회(정회원)		
	성명	맹정환		성명	현규진
	출생연도	1982년생		출생연도	1978년생
	거주지	화도읍		거주지	화도읍
	직업	(주)엠엔엠레저코리아대표		직업	교육서비스업

## 8 MOU 성과

- 기간 : 2024. 1월 ~ 12월
- 체결기관 : 엘에스한방병원,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 주요내용 : 남양주시 체육인들에 대한 스포츠 복지 확대
- 체결현황












## 2024년 읍면동체육회 체육대회 성과

○ 기 간 : 2024. 5월 ~ 10월(6개월 간)

○ 개최규모 : 16개 읍면동 18,800명

읍면동명	활 동 사 진	내 용
진접읍		· 진접읍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24. 5. 18.(토) - 장 소 : 크낙새구장 - 참여인원 : 500명
양정동		· 제13회 양정동민 화합 체육대회 - 일 시 : 2024. 9. 20.(금) - 장 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 참여인원 : 300명
금곡동		· 금곡동 너나들이 문화체육축제 - 일 시 : 2024. 9. 28.(토) - 장 소 : 이석영광장 - 참여인원 : 4,000명
다산2동		· 제11회 다산2동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24. 9. 28.(토) - 장 소 : 양정초등학교 - 참여인원 : 1,000명
와부읍		· 2024 와부읍민 한마음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 일 시 : 2024. 9. 29.(일) - 장 소 : 덕소초등학교 - 참여인원 : 1,000명
오남읍		· 2024 오남읍민 한마음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 일 시 : 2024. 10. 12.(토) - 장 소 : 오남체육공원 - 참여인원 : 1,000명
수동면		· 2024 수동면 체육대회 - 일 시 : 2024. 10. 12.(토) - 장 소 : 수동중학교 - 참여인원 : 300명

읍면동명	사진	내 용
화도읍		· 제11회 화도읍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 일 시 : 2024. 10. 12.(토) - 장 소 : 심석고등학교 - 참여인원 : 3,000명
평내동		· 제10회 평내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24. 10. 12.(토) - 장 소 : 평내중학교 - 참여인원 : 1,000명
진건읍		· 제22회 진건읍민 체육대회 - 일 시 : 2024. 10. 19.(토) - 장 소 : 먹골구장 - 참여인원 : 2,000명
퇴계원읍		· 2024년 퇴계원읍민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24. 10. 19.(토) - 장 소 : 도제원초등학교 - 참여인원 : 1,000명
별내면		· 2024년 별내면 한마음 체육문화축제 - 일 시 : 2024. 10. 19.(토) - 장 소 : 에코랜드 - 참여인원 : 1,000명
호평동		· 제10회 호평동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24. 10. 26.(토) - 장 소 : 호평중학교 - 참여인원 : 1,500명
조안면		· 2024 조안면 면민 체육대회 - 일 시 : 2024. 10. 26.(토) - 장 소 : 조안면체육공원 - 참여인원 : 500명
별내동		· 제4회 별내동 한마음체육대회 - 일 시 : 2024. 10. 26.(토) - 장 소 : 별내동체육공원 - 참여인원 : 2,500명
다산1동		· 제10회 다산1동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24. 10. 26.(토) - 장 소 : 도농체육공원 - 참여인원 : 3,000명

## 2024년 종목단체 대회 개최 및 참가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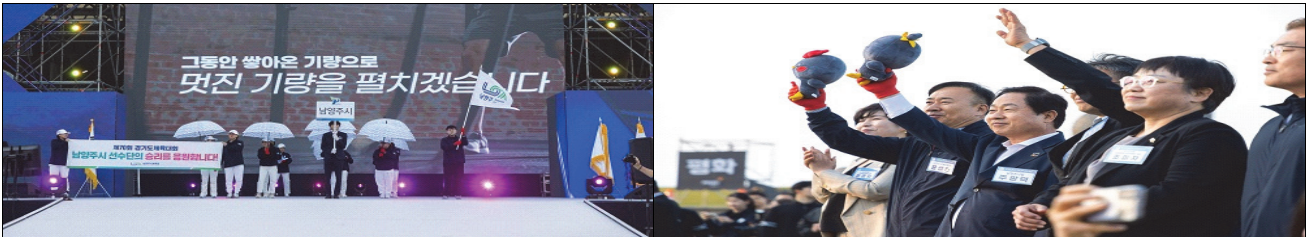
### 1 제18회 남양주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 기 간 : 2024. 4월 ~ 11월(8개월 간)
- 장 소 : 남양주시 관내 체육시설
- 개최규모 : 34개 종목단체 15,000명



### 2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 기 간 : 2024. 5. 9.(목) ~ 11.(토) / 3일간
- 장 소 : 파주시 일원
- 참가인원 : 26개 종목 405명(선수 301명, 임원 104명)
- 성 과 : 종합 10위(금 8개, 은 4개, 동 15개)



### 3 제6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체육대회 개최

- 기 간 : 2024. 4월 ~ 6월(3개월 간)
- 장 소 : 남양주시 관내 체육시설
- 개최규모 : 15개 종목단체 8,309명



#### 4 제1회 남양주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 기 간 : 2024. 7월 ~ 11월(5개월 간)
- 장 소 : 남양주시 관내 체육시설
- 개최규모 : 3개 종목 4개 대회 총 589명 참여(관내 470명, 관외 119명)
- 주요내용 : 유·청소년을 위한 볼링, 유도, 야구대회 개최



#### 5 2024. 생활체육 종목활성화지원

- 기 간 : 2024. 3월 ~ 12월(10개월 간)
- 장 소 : 전국 일원
- 참가인원 : 36개 종목단체 6,247명
- 성 과 : 문체부장관기 게이트볼대회 우승 등 31개 대회 입상



#### 6 제14회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지원 개최

- 기 간 : 2024. 4월 ~ 11월(8개월 간)
- 장 소 : 남양주시 관내 체육시설
- 개최규모 : 8개 종목단체 709팀 4,306명 / 총 30회



## 7 제8회 남양주시장배 여성스포츠대회 개최

- 기 간 : 2024. 10월 ~ 12월(3개월 간)
- 장 소 : 남양주시 일원
- 개최규모 : 7개 종목단체 2,161명



## 8 제15회 남양주시 한강걷기대회 개최

- 일 시 : 2024. 5. 25.(토) / 1일간
- 장 소 :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
- 참가인원 : 3,011명 참가
- 주요내용 : 5Km · 10Km걷기, 체험부스, 경품 추첨 등



## 9 2024. 경기도체육대회 선발전 개최

- 기 간 : 2024. 9월 ~ 11월(3개월 간)
- 장 소 : 남양주시 관내 체육시설
- 개최규모 : 5개 종목단체 280명



## 10 2024. 남양주시장기 에코랜드 먹골배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

- 기 간 : 2024. 10. 31.(목) ~ 11. 3.(일) / 4일간
- 장 소 : 남양주시 별내면 테니스장 외 10곳
- 개최규모 : 5개부 447개 팀 89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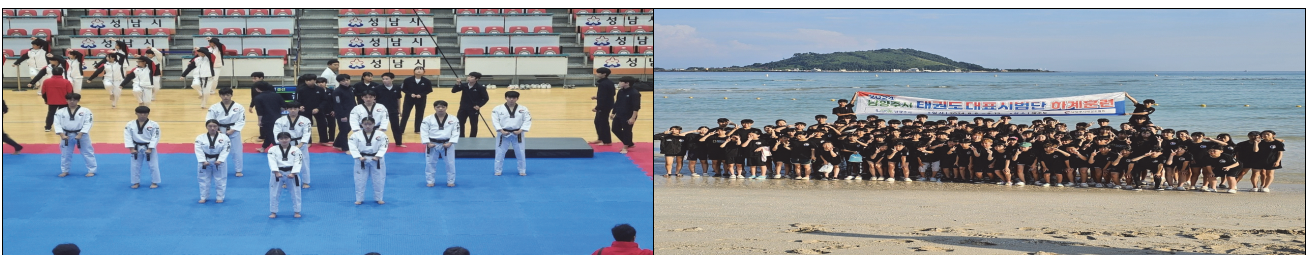
## 11 제10회 남양주시장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

- 기 간 : 2024. 4. 13.(토) ~ 14.(일) / 2일간
- 장 소 : 화도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 개최규모 : 573개팀 2,292명(관외 3개 강원, 전남, 인천 지역참가)



## 12 남양주시태권도협회 태권도시범단 운영

- 기 간 : 2024. 2월 ~ 12월(11개월 간)
- 인 원 : 총 127명(임원 7명, 선수 120명)
- 주요활동사항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하계 전지 훈련, 남양주체육인의밤 시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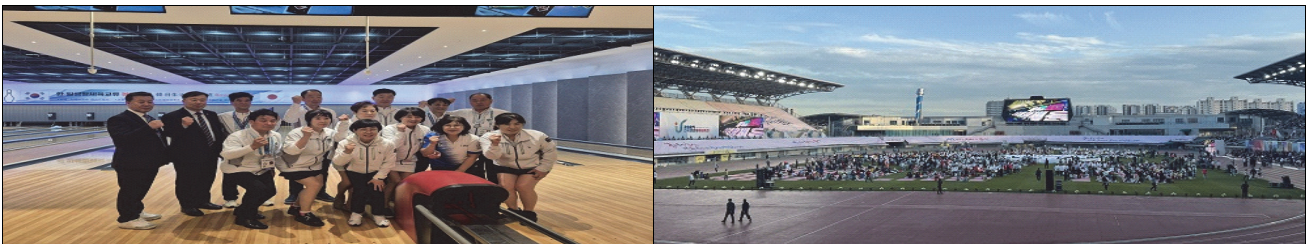
### 13 제35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 기 간 : 2024. 9. 27.(금) ~ 29.(일) / 3일간
- 장 소 : 성남시 일원
- 참가인원 : 22개 종목 총 589명(임원 62명, 선수 527명)
- 성 과 : 15개 종목 38개(금 11개, 은 10개, 동 17개) 메달 획득



### 14 2024.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 기 간 : 2024. 4. 25.(목) ~ 28.(일) / 4일간
- 장 소 : 울산광역시 일원
- 참가인원 : 13개 종목 총 51명 참가
- 성 과 : 6개 종목 8개(금 3개, 은 2개, 동 3개) 메달 획득



### 15 2024년 생활체육동호회리그 개최

- 기 간 : 2024. 6월 ~ 11월(6개월 간)
- 종목 및 장소 : 볼링 / 관내볼링장
- 개최규모 : 32팀 6회 576명





## 16 기부금 사업

- 기 간 : 2024. 4월 ~ 11월(8개월 간)
- 장 소 : 남양주시 관내 체육시설
- 참여인원 : 6개 사업 3,272명 참여

연번	사 업 명	기 간	장 소	참여인원
1	치매예방(Earthing) 체조교실	2024. 4월 ~ 10월	한강공원 삼패지구	65회 668명
2	어르신 대사증후군 예방 다이어트 체조교실	2024. 5월 ~ 9월	JK댄스스쿨	59회 1,193명
3	청소년 클라이밍교실	2024. 5월 ~ 7월	남양주 인공암벽장	10회 171명
4	남양주시 60대 축구 클럽리그전	2024. 6월 ~ 9월	남양주BC구장	290명
5	제1회 사제동행 배구대회	2024. 10. 27.(일)	화도체육문화센터	350명
6	20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대한민국 전통무예 합기도 전국대회 다사랑 나눔축제	2024. 11. 30.(토)	화도체육문화센터	600명

## 17 2024년 경기도체육진흥공모사업 개최

- 기 간 : 2024. 4월 ~ 12월(9개월 간)
- 장 소 : 남양주시 관내 체육시설
- 개최규모 : 7개 회원단체 8개 사업 6,604명 참가

연번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1	남양주시 초등생 배드민턴 교실	2024. 4월 ~ 6월	부평리배드민턴장	986명
2	다산 정약용배 전국합기도대회	2024. 5. 25.(토)	화도체육문화센터	1,000명
3	달려라 드론레이싱교실	2024. 5월 ~ 6월	관내 고등학교	220명
4	남양주시 권역별 배드민턴대회	2024. 6.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800명
5	남양주시 여성 당구인대상 기초교육 프로그램	2024. 6월 ~ 8월	진접 클라우스 및 오남 챔퍼스클럽	500명
6	남양주시 연령대초강전 및 센터대항 볼링대회	2024. 10월 ~ 11월	관내 볼링장	1,000명
7	남양주시 청소년 생활체육 풋살대회	2024. 10. 26.(토)	크낙새 축구장	600명
8	2024. 다산 정약용배 유청소년 태권도대회	2024. 12. 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1,500명

# 2024년 체육회 교실 운영 성과

## 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 기 간 : 2024. 1월 ~ 12월(연중 운영)
- 인 원 : 지도자 11명(일반 5명, 어르신 6명)
- 주요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교실운영 등
- 실 적 : 12개 프로그램 / 51개소 / 지도횟수 3,920회 / 지도인원 50,269명

구분	지도자명	개 소	지도횟수	지도인원	비 고
합계		51개소	3,920회	50,269명	
일반 지도 자	최정은	3개소	211회	1,891명	
	임경섭	4개소	243회	2,433명	
	박건희	6개소	574회	5,139명	
	최한솔	2개소	117회	874명	
	이진주	4개소	85회	641명	
어 르 신 지 도 자	김정화	6개소	568회	13,092명	
	박정미	6개소	593회	10,607명	
	강 건	6개소	566회	6,850명	
	이용현	7개소	638회	5,701명	
	한소희	6개소	323회	3,025명	
	김영인	1개소	2회	16명	육아휴직



## 2 2024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 기 간 : 2024. 3월 ~ 12월(10개월 간)
- 참여대상 : 남양주 시민 누구나
- 운영실적 : 27개소 6개종목 1,657회 54,039명 참여



## 3 경기스포츠클럽 육성지원

- 기 간 : 2024. 4월 ~ 11월(8개월 간)
- 장 소 : 금곡실내체육관 / 스타락볼링센터
- 대 상 : 2개 종목(일반 : 배구 / 직장인 : 볼링)
- 운영실적 : 137회 총 1,896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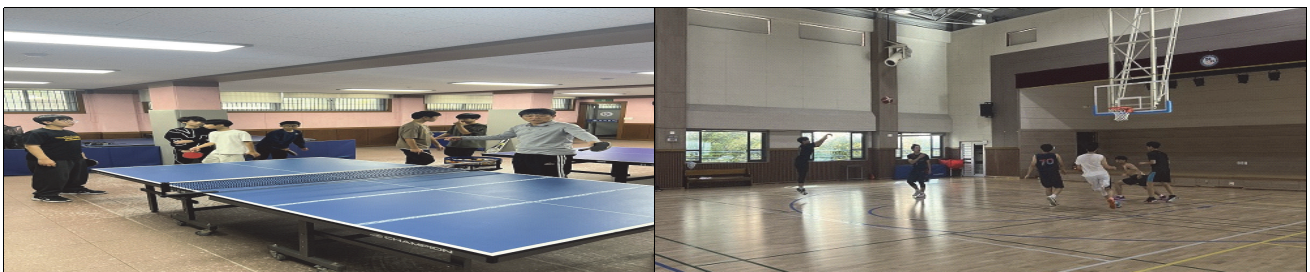
#### 4 2024.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 기 간 : 2024. 4월 ~ 12월(9개월 간)
- 장 소 : 관내 초등학교 체육시설
- 운영실적 : 33개교 65개 클럽
- 주요내용 : 용품 및 강사 지원 등



#### 5 2024.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운영

- 기 간 : 2024. 5월 ~ 12월(8개월 간)
- 장 소 :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체육시설
- 운영실적 : 총 13개소(학교 안 10개교 / 학교 밖 3개소)
- 주요내용 : 용품 및 강사 지원 등



## 2024년 남양주시체육회 사업별 결과보고

사 업 명	주요성과	비고
제18회 남양주시장기체육대회	34개 종목 13,371명 참여	
제6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체육대회	15개 종목 8,309명 참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	26개 종목 405명 참가	
제1회 남양주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지원	3개 종목 4개 대회 589명 참여(관외 119명)	
2024년 읍면동체육대회	16개 읍면동 18,800명 참여	
제15회 남양주시 한강걷기대회	3,011명 참가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4개 종목 6개클럽 운영	
2024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27개소 1,657회 54,039명 참여	
제35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지원	22개 종목 총 589명(임원 62명, 선수 527명)	
2024. 생활체육 종목활성화 지원	36개 종목 59개 대회 4,086명 참가	
제8회 남양주시장배 여성스포츠대회	7개 종목 232개 팀 2,161명 참가	
제14회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지원	8개 종목 709팀 4,306명 참여	
2024. 남양주시태권도협회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	130여명 시범단원 육성	
2024. 경기도체육대회 선발전 개최지원	5개 종목 31명 선수 선발	
제10회 남양주시장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	573개팀 2,292명 참여	
2024. 남양주시장기 에코랜드 먹골배 전국 테니스대회	5개부 447개 팀 894명 참여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지원	22개 종목 122명 지원	
2024. 전문체육대회 입상지원	5개 대회 23개 종목 42명 포상금 지급	
2024.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13개 종목 5명	
2024. 경기스포츠클럽 육성지원	137회 총 1,896명 참여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14개 종목 46명 참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8개 종목 20명 참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1개 교실 3,573회 46,447명 참여	
2024년 경기도체육진흥공모사업	7개 단체 8개 사업 6,604명 참여	
2024년 생활체육동호회리그	32팀 576명 참여	
2024.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33개교 65개클럽 1,769회 20,919명 참여	
2024.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운영	학교(안) 10개교 3,218명 / 학교(밖) 3개소 1,350 참여	
2024년 기부금사업	6개 사업 3,272명 참여	

## 전문 체육 대회 입상 성과

### 1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 경기도체육대회 : 종합 10위 유지, 종합 점수 1,648점 상승  
 - 금 10개, 은 5개, 동 17개(26개 종목 405명 참가)

종목명	성 적		비 고
육 상	금2, 동3	서성은(포환던지기) 금, 이진영(400m) 금, 김지혜(200m) 동, 정은아(멀리뛰기) 동, 남일부 4x400mR 동	
수 영	동1	김한준(평영 50m) 동	
축 구	금1, 동1	남자단체 금, 여자단체 동	
배 구	동1	여자단체 동	
복 싱	동2	이준영(-49kg) 동, 윤재림(-60kg) 동	
역 도	은1, 동1	이원석(-67kg) 은, 이지완(-67kg) 동	
씨 림	동1	박민서(-80kg) 동	
유 도	금2, 은1	임주용(-90Kg) 금, 박견우(-100Kg) 금, 박성현(-81Kg) 은	
검 도	은1	남자단체 은	
태 권 도	은1	이주형(-68kg) 은	
볼 링	동2	남자단체 동, 여자단체 동	
보디빌딩	금2	오테일(-80Kg) 금, 윤용(-85kg) 금	
농 구	동1	남자단체 동	
레 슬 링	동2	박도진(자유형-65kg/그레코로만형-67kg) 동2	
산 약	금2, 은1, 동1	김진아(스피드/리드) 금·은, 이효빈(스피드) 금, 김양희(스피드) 동	시범
댄스스포츠	동1	라틴 5종목 단체 동	시범

### 2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전국체육대회(동·하계) : 동계체전 21연패, 하계체전 3연패 기여  
 - 금 12개, 은 7개, 동 8개(14개 종목 46명 참가)

종목명	성 적		비 고
빙 상	금6, 은4, 동5	구경민(500m/1,000m) 금2, 윤유진(500m/1,000m) 금2, 최하연(4주/매스스타트/1,500m) 금·은·동, 윤지환(4주/1,500m) 금·동, 김윤후(4주) 금, 김민재(8주/10,000m) 은·동, 김하엘(500m/10,000m) 은·동, 이우빈(500m) 은, 신선웅(500m) 동	
검 도	금2	윤범열(남일부 단체전) 금, 김승민(남고부 단체전) 금	
유 도	금2, 동1	이성민(-60kg) 금, 손채영(단체전/-63kg) 금·동	
육 상	은2	강동형(800m/4x400mR) 은2	
체 조	은1	조하빈(리듬체조) 은	
에어로빅힙합	동2	이하민(스텝단체/힙합단체) 동2	
스쿼시	금2	조아연(개인전/단체전) 금2, 임수아(단체전) 금	

### 3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 최우수선수(MVP) 선정(에어로빅힙합 문정욱)  
 - 금 5개, 은 2개, 동 7개(8개 종목 20명 참가)

종목명	성 적		비고
배드민턴	은1	홍수지(단체전) 은	
에어로빅힙합	금2, 은1	문정욱(3인조/5인조/개인전) 금2·은1, 홍가빈(5인조) 금	
카 누	금2, 동2	박태휘(K1 500m/K2 500m) 금2, 이정원(K4 500m) 동, 임종현(K4 500m) 동, 박지원(k4/500m) 동	
유 도	동2	임수경(-35Kg) 동, 이은찬(-90kg) 동	
육 상	동2	손우준(4x100mR) 동, 김여은(4x100mR) 동	
수 영	금1, 동1	성재니(혼계영 200m/배영 50m) 금1·동1	

### 4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 G-스포츠클럽 : 4개 종목 6개 클럽 운영  
 - 24개 대회 출전 12개 대회 입상(금 2개, 은 5개, 동 5개)

클럽명	성 적	대 회 명	대 상 자
육 상	금 1	제52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정서진 (중등 800m)
수 영	은 1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영(경영)페스티벌 겸 제10회 서울특별시연맹회장배수영대회	이세이 (초등 배영 50m)
볼 링	동 1	안산 별망성CUP 오픈볼링대회	김소희 (초등 여자)
배드민턴 1	동 1	전국 연맹 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이채훈 (초등 남자단식)
배드민턴 2	은 1	김학석배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김사랑 (초등 여자단식)
배드민턴 3	금 1	한국 중·고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홍수지 (여자단식)
	은 3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선발전(2차)	홍수지 (여자단식)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홍수지 (단체전)
		김학석배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박서연 (혼합복식)
	동 3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김한울 (여자단식)
			신소영, 김한울 (여자복식)
		김학석배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신소영 (혼합복식)

# 생활체육 대회 입상 성과

## 1 제35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 15개 종목 38개(금 11개, 은 10개, 동 17개) 메달 획득
- 참가인원 : 22개 종목 총 589명(임원 62명, 선수 527명)

연번	종목	종별	세부종목	선수명	결과	비고	
1	파크골프	일반	개인전 A조(남자)	김홍년	1위		
			개인전 B조(여자)	권복순	1위		
2	게이트볼	일반	단체전 A조(남자)	이춘옥 외 7명	1위	종합 2위	
3	배드민턴	일반	30대	남북	이기환, 박형원	1위	
				여북	위혜진, 김진수	3위	
			40대	남북	송영섭, 이천무	1위	
				여북	이진선, 손현미	3위	
		50대	남북	배성호, 정종명	1위		
			여북	김진숙, 박인정	3위		
어르신	70대	남북	이일환, 박이봉	1위			
4	육상	일반	4×100mixed		박병균 외 3명	1위	
			4×100m 남자계주		백성수 외 3명	3위	
			100m	40대(여자)	전영은	3위	
				50대(여자)	박혜영	3위	
			400m	60대(남자)	박병균	2위	
			1500m	40대(남자)	김대진	2위	
			10km	40대(여자)	정미정	3위	
5	궁도	일반	개인전(남자)	김청기	1위		
			단체전(남자)	김청기 외 5명	3위		
6	당구	어르신	75세 이상	황호연	1위		
			74세 이하	나도민	3위		
7	축구	일반	60대	오희석 외 19명	2위		
8	탁구	일반	50대(여자)	김혜진	2위		
9	볼링	일반	개인전(여자)	박장미	2위		
		어르신	단체전	이성희 외 4명	1위		
10	배구	일반	남자	양철진 외 12명	2위	종합 1위	
			여자	김금수 외 14명	2위		
11	보디빌딩	일반	-75kg(남자)	조성원	2위		
			비키니피트니스(여자)	전수림	3위		
12	국학기공	어르신	-	우선옥 외 15명	2위	종합 3위	
		일반	-	이명우 외 13명	4위		
13	수영	일반	평영 50m(남자)	신우진	2위		
			자유형 50m(남자)	신우진	3위		
			배영 50m(남자)	김윤	3위		
			배영 50m(여자)	박정현	3위		
14	족구	일반	30대	임창순 외 6명	3위		
15	합기도 (청소년)	일반	미들급-80kg(남자)	조강산	3위		
			슈퍼헤비급+85kg(남자)	조한서	3위		
			플라이급 -50kg(여자)	신하린	3위		



## 2 각종 생활체육대회 입상결과

대 회 명	성 과
제7회 청송군수기 전국 초등학생 검도대회	동 2개
제31회 문체부장관기 게이트볼대회	금 1개
제14회 경기도협회장기 국학기공대회	금 1개
제11회 충청남도-천안시 국제 국학기공대회	은 1개
제12회 경기도연합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은 1개
제28회 경기도지사기 농구대회	종합 3위, 금 1개, 은 1개, 동 1개
제4회 수원특례시 댄스스포츠대회	금 1개, 은 1개
제60회 박계조배 전국 남녀 9인제 배구대회	은 1개, 동 1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복싱 경기도대표선발전	동 1개
제39회 경기도협회장배 볼링대회	금 1개, 은 1개
제26회 문체부장관기 전국 볼링대회	은 1개
2024. 경기도지사기 볼링대회	종합 1위, 은 1개
2024. 경기북부 10개 시·군 볼링대회	은 1개
2024.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대회	금 7개, 은 7개, 동 1개
제6회 경기도지사기 종합등반대회	종합 1위, 금 6개, 은 1개, 동 4개
제19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에어로빅힙합대회	금 4개, 은 2개, 동 2개
2024. 명실상주 전국유도대회	금 2개, 은 2개, 동 1개
2024. 백제왕도 전국유도대회	금 3개, 은 2개, 동 3개
2024.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금 3개, 동 1개
2024. 경기도지사배 육상대회	종합 1위
2024. 경기도지사기 줄넘기대회	금 22개, 은 3개, 동 1개
2024. 경기도의회 의장기태권도대회	금 1개
2024. 경기도지사기 테니스대회	동 3개
2024. 경기도 시·군대항 파크골프대회	은 1개, 동 1개
제24회 문체부장관기 패러글라이딩대회	금 2개
2024. 산림청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금 1개, 은 1개, 동 1개
2024. 경기도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동 1개
2024.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은 2개, 동 1개
제13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은 1개
2024. 경기도지사배 탁구대회	금 1개
2024. 경기도협회장배 탁구대회	금 1개, 은 1개

# 2024년 수입·지출 결산(안)

시민과 함께한 30년

- 2024년도 -  
수입·지출 결산(안)

# 2024년 남양주시체육회 운영 결산 감사보고

# 2024년도 남양주시체육회 결산감사 보고서

본 감사는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46조에 의거 2024년도 남양주시체육회 운영 수입·지출 결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운영 수입·지출 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포함됩니다.

- 2024년도 수입·지출결산 총괄표
- 2024년도 지출결산 집행잔액 보고서
- 2024년도 사업별 집행내역 총괄표
- 2024년도 예산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 2024년도 남양주시체육회 이사회비·회원단체회비·G스포츠클럽운영회비

본 감사는 남양주시체육회 감사규정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 첨부된 운영 수입·지출 결산서는 남양주시체육회의 2024년 수입·지출 내용을 회계규정을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5. 01. 17.

남양주시체육회 회계감사 : 김 상 운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체육회 행정감사 : 장 성 민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체육회 행정감사 : 정 재 훈 (서명 또는 인)

# 감 사 보 고

2024년도 남양주시체육회의 재정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임.

## □ 수입

- 시비보조금 ..... 3,114,533,000원
- 기금 ..... 92,111,000원
- 국비보조금 ..... 67,928,000원
- 도비보조금 ..... 237,269,000원
- 국도시비보조금 ..... 377,376,000원
- 도시비보조금 ..... 14,256,000원
- 도시교육청비보조금 ..... 122,540,000원
- 시교육청비보조금 ..... 280,000,000원
- 이사회비사업 ..... 322,114,392원
- 회원단체회비사업 ..... 68,331,243원
- 체육꿈나무육성기금사업 ..... 61,349,719원
- G-스포츠클럽종목별회비 ..... 33,100,000원
- 기부금사업 ..... 69,264,567원
- 출연금(기본재산) ..... 50,093,988원
- 후원금 ..... 3,000,000원

총 4,913,266,90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343,379,919원이 포함되었음.

□ 지출

- 시비보조금 ..... 2,964,056,646원
- 기금 ..... 90,353,550원
- 국비보조금 ..... 63,482,000원
- 도비보조금 ..... 213,256,270원
- 국도시비보조금 ..... 304,521,975원
- 도시비보조금 ..... 10,208,400원
- 도시교육청비보조금 ..... 110,645,300원
- 시교육청비보조금 ..... 229,849,660원
- 이사회비사업 ..... 140,808,280원
- 회원단체회비사업 ..... 55,971,230원
- 체육꿈나무육성기금사업 ..... 35,000,000원
- G-스포츠클럽종목별회비 ..... 15,869,060원
- 기부금사업 ..... 29,495,600원
- 출연금(기본재산) ..... 0원
- 후원금 ..... 0원

총 4,263,517,971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잔액

- 보조금반환금 ..... 336,870,139원
- 다음연도 이월금 ..... 312,878,799원

총 649,748,938원이 발생하여 그중 반환금 336,870,139원을 제외한 312,878,799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음.

## 2024년도 수입·지출결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당해연도 수납액 (B)	전년도 이월액 (C)	수입액 (D = B + C)	집행액 (E)	집행잔액 (F = D - E)	
<b>합계</b>		4,920,895,000	4,569,886,990	343,379,919	4,913,266,909	4,263,517,971	649,748,938	
보조금	소계	4,306,013,000	4,306,013,000	0	4,306,013,000	3,986,373,801	319,639,199	
	시비	3,114,533,000	3,114,533,000	0	3,114,533,000	2,964,056,646	150,476,354	
	기금	92,111,000	92,111,000	0	92,111,000	90,353,550	1,757,450	
	국비	67,928,000	67,928,000	0	67,928,000	63,482,000	4,446,000	
	도비	237,269,000	237,269,000	0	237,269,000	213,256,270	24,012,730	
	국도시비	377,376,000	377,376,000	0	377,376,000	304,521,975	72,854,025	
	도시비	14,256,000	14,256,000	0	14,256,000	10,208,400	4,047,600	
	도시교육청비	122,540,000	122,540,000	0	122,540,000	110,645,300	11,894,700	
	시교육청비	280,000,000	280,000,000	0	280,000,000	229,849,660	50,150,340	
자체	소계	614,882,000	263,873,990	343,379,919	607,253,909	277,144,170	330,109,739	
	이사회비	계	321,633,000	162,053,990	160,060,402	322,114,392	140,808,280	181,306,112
		회비	196,462,000	162,053,990	34,868,453	196,922,443	140,808,280	56,114,163
		예치금	125,171,000	0	125,191,949	125,191,949	0	125,191,949
	회원단체	69,610,000	55,720,000	12,611,243	68,331,243	55,971,230	12,360,013	
	체육꿈나무육성기금	61,370,000	0	61,349,719	61,349,719	35,000,000	26,349,719	
	G-스포츠클럽종목별회비	39,800,000	33,100,000	0	33,100,000	15,869,060	17,230,940	
	기부금사업	69,336,000	10,000,000	59,264,567	69,264,567	29,495,600	39,768,967	
	기본재산(출연금)	50,133,000	0	50,093,988	50,093,988	0	50,093,988	
	출연금	3,000,000	3,000,000	0	3,000,000	0	3,000,000	



# 2024년도 지출결산 집행잔액 보고서

2025. 1. 15.(수)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집행잔액 (A = B + C)	보조금 반환금 (B)	다음연도 이월액 (C)	비고	
<b>합 계</b>		<b>649,748,938</b>	<b>336,870,139</b>	<b>312,878,799</b>		
<b>보조금</b>	소 계	319,639,199	319,639,199	0		
	시 비	150,476,354	150,476,354	0		
	기 금	1,757,450	1,757,450	0		
	국 비	4,446,000	4,446,000	0		
	도 비	24,012,730	24,012,730	0		
	국도시비	72,854,025	72,854,025	0		
	도 시 비	4,047,600	4,047,600	0		
	도시교육청비	11,894,700	11,894,700	0		
	시교육청비	50,150,340	50,150,340	0		
<b>자체</b>	소 계	330,109,739	17,230,940	312,878,799		
	이사회비	계	181,306,112	0	181,306,112	
		회 비	56,114,163	0	56,114,163	
		예치금	125,191,949	0	125,191,949	
	회원단체	12,360,013	0	12,360,013		
	체육꿈나무육성기금	26,349,719	0	26,349,719		
	G-스포츠클럽종목별회비	17,230,940	17,230,940	0		
	기부금사업	39,768,967	0	39,768,967		
	기본재산(출연금)	50,093,988	0	50,093,988		
후원금	3,000,000	0	3,000,000			

## 2024년도 사업별 집행내역 총괄표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수입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B-C)	비고
<b>계</b>	<b>4,920,895,000</b>	<b>4,913,266,909</b>	<b>4,263,517,971</b>	<b>649,748,938</b>	
<b>보조금 소계</b>	<b>4,306,013,000</b>	<b>4,306,013,000</b>	<b>3,986,373,801</b>	<b>319,639,199</b>	
<b>시비</b>	<b>3,114,533,000</b>	<b>3,114,533,000</b>	<b>2,964,056,646</b>	<b>150,476,354</b>	
남양주시체육회육성지원	1,150,899,000	1,150,899,000	1,136,157,080	14,741,920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	154,904,000	154,904,000	124,021,280	30,882,720	
경기도체육대회참가지원	400,000,000	400,000,000	382,115,294	17,884,706	
경기도체육대회참가선수 육성지원	293,600,000	293,600,000	290,730,860	2,869,140	
전국체육대회참가지원	11,630,000	11,630,000	8,743,000	2,887,000	
소년체전참가선수단지원	5,700,000	5,700,000	5,650,000	50,000	
시장기체육대회개최지원	205,000,000	205,000,000	190,786,821	14,213,179	
의장기체육대회개최지원	100,000,000	100,000,000	98053850	1,946,150	
체육회장배체육대회개최지원	20,000,000	20,000,000	19,982,000	18,000	
생활체육동호인클럽육성지원	50,000,000	50,000,000	49,622,280	377,720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참가지원	120,000,000	120,000,000	106508876	13,491,124	
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	150,000,000	150,000,000	130,423,100	19,576,900	
남양주시장기전국 배드민턴대회개최지원	20,000,000	20,000,000	19,999,320	680	
남양주시태권도협회 태권도시범단운영지원	100,000,000	100,000,000	97,521,050	2,478,950	
남양주시장기전국에코랜드먹골배테니스대회	10,000,000	10,000,000	9,860,000	140,000	
남양주한강걷기대회개최지원	50,000,000	50,000,000	49,517,280	482,720	
생활체육종목활성화지원	190,000,000	190,000,000	172,068,347	17,931,653	
남양주시체육회종목별 단체육성지원	82,800,000	82,800,000	72,296,208	10,503,792	
<b>체육진흥기금</b>	<b>92,111,000</b>	<b>92,111,000</b>	<b>90,353,550</b>	<b>1,757,450</b>	
경기도체육대회참가선수선발전개최지원	40,000,000	40,000,000	38,242,550	1,757,450	
전문체육대회입상지원(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52,111,000	52,111,000	52,111,000	0	
<b>국비</b>	<b>67,928,000</b>	<b>67,928,000</b>	<b>63,482,000</b>	<b>4,446,000</b>	
시군생활체육회운영지원	12,000,000	12,000,000	12,000,000	0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기금사업)	55,928,000	55,928,000	51,482,000	4,446,000	
<b>도비</b>	<b>237,269,000</b>	<b>237,269,000</b>	<b>213,256,270</b>	<b>24,012,730</b>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배드민턴협회_초등)	24,000,000	24,000,000	23,999,700	300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배드민턴협회_권역)	20,000,000	20,000,000	20,000,000	0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합기도협회)	20,448,000	20,448,000	20,448,000	0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드론항공협회)	17,713,000	17,713,000	17,553,000	160,000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당구연맹)	13,500,000	13,500,000	13,500,000	0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수입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B-C)	비고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불링협회)	10,500,000	10,500,000	10,500,000	0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진접읍체육회)	24,000,000	24,000,000	24,000,000	0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태권도협회)	18,000,000	18,000,000	17,672,000	328,000	
경기도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58,796,000	58,796,000	35,411,070	23,384,930	
경기도 생활체육동호회리그	20,000,000	20,000,000	19,900,000	100,000	
경기시니어건강관리 프로젝트	8,920,000	8,920,000	8,920,000	0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1,392,000	1,392,000	1,352,500	39,500	
<b>국도시비</b>	<b>377,376,000</b>	<b>377,376,000</b>	<b>304,521,975</b>	<b>72,854,025</b>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	188,688,000	188,688,000	147,468,325	41,219,675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	188,688,000	188,688,000	157,053,650	31,634,350	
<b>도시비</b>	<b>14,256,000</b>	<b>14,256,000</b>	<b>10,208,400</b>	<b>4,047,600</b>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14,256,000	14,256,000	10,208,400	4,047,600	
<b>도시교육청비</b>	<b>122,540,000</b>	<b>122,540,000</b>	<b>110,645,300</b>	<b>11,894,700</b>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122,540,000	122,540,000	110,645,300	11,894,700	
<b>시교육청비</b>	<b>280,000,000</b>	<b>280,000,000</b>	<b>229,849,660</b>	<b>50,150,340</b>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280,000,000	280,000,000	229,849,660	50,150,340	
<b>자체예산 소계</b>	<b>614,882,000</b>	<b>607,253,909</b>	<b>277,144,170</b>	<b>330,109,739</b>	
이사회비	321,633,000	322,114,392	140,808,280	181,306,112	자 체 (이자 196,087원)
회원단체	69,610,000	68,331,243	55,971,230	12,360,013	자 체 (이자 17,876원)
체육꿈나무 육성기금	61,370,000	61,349,719	35,000,000	26,349,719	자 체 (이자 32,693원)
G-스포츠클럽종목별회비	39,800,000	33,100,000	15,869,060	17,230,940	자 체 (이자 10,545원)
기부금 사업	69,336,000	69,264,567	29,495,600	39,768,967	기 부 금 (이자 45,911원)
출연금(기본재산)	50,133,000	50,093,988	0	50,093,988	출 연 금 (이자 43,108원)
후원금	3,000,000	3,000,000	0	3,000,000	후 원 금 (이자 2,087원)

○ 2024년도 예산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항 목	집 행 액	비 고
남양주시체육회육성지원	<b>소 계</b>	<b>1,136,157,080</b>	시비보조금
	기본급	577,482,070	
	명절휴가비	57,010,830	
	배우자가족수당	5,708,690	
	초과근무수당	115,519,360	
	정액급식비	28,175,370	
	연가보상비	10,321,500	
	퇴직적립금	71,246,060	
	4대보험부담금	77,933,990	
	사무관리비	76,829,810	
	공공운영비	29,031,93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272,000	
	국내여비	15,361,440	
	국외업무여비	4,253,31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7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59,6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96,910		
직급보조비	39,479,210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	<b>소 계</b>	<b>124,021,280</b>	시비보조금
	근속수당	4,524,070	
	활동수당	28,487,320	
	배우자가족수당	3,681,950	
	초과근무수당	9,711,680	
	정액급식비	16,337,240	
	연가보상비	3,900,980	
	퇴직적립금	6,291,180	
	4대보험부담금	4,539,400	
	행사운영비	7,120,00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248,000	
	국내여비	16,510,000	
	직급보조비	11,669,460	
경기도체육대회참가지원	<b>소 계</b>	<b>382,115,294</b>	시비보조금
	<b>사무관리비</b>	<b>55,918,000</b>	
	-피복비	54,400,000	
	-임차료	968,000	
	-일반수용비	0	
	-회계감사비	550,000	
	<b>공공운영비</b>	<b>300,000</b>	
	-차량선택비	300,000	
	<b>행사운영비</b>	<b>11,947,860</b>	
	-개막식 운영비(이벤트, 현수막 등)	2,955,000	
	-선수 등록비	400,000	
	-현수막	1,947,000	
	-선수 상해보험	918,960	

세부사업명	항 목	집 행 액	비 고
경기도체육대회참가지원	-해단식 운영비	5,000,000	시비보조금
	-행사운영 지원	543,900	
	-사전답사(만찬장, 숙소)	183,000	
	<b>국내여비</b>	<b>6,834,000</b>	
	-일비	937,500	
	-숙박료	4,200,000	
	-식비	1,696,500	
	<b>시책추진업무추진비</b>	<b>19,502,000</b>	
	-참가선수 격려(만찬)	5,638,000	
	-해단식 만찬	3,000,000	
	-대회 참가선수 훈련 격려	1,820,000	
	-대회참가선수 현지 격려(음료 등)	944,000	
	-현지 격려금	7,800,000	
	-입장부 격려금	300,000	
	<b>행사실비보상금</b>	<b>80,300,000</b>	
	-종목별 감독수당	15,000,000	
	-참가선수 훈련수당(교통비 등)	37,200,000	
	-참가선수 출전수당	28,100,000	
	<b>단체보조금</b>	<b>207,313,434</b>	
	-출전 종목 강화훈련 및 용품구입	151,113,930	
-숙박비	11,265,000		
-종목별 운영비	11,035,895		
-현지경비(식비 등)	33,898,609		
경기도체육대회참가선수 육성지원	<b>소 계</b>	<b>290,730,860</b>	시비보조금
	<b>공공운영비</b>	<b>2,331,360</b>	
	-보험가입 비용	2,331,360	
	<b>업무추진비</b>	<b>199,500</b>	
	-간담회	199,500	
	<b>운동선수보상금</b>	<b>288,200,000</b>	
	-우수선수 지원금	245,000,000	
-실무자 지원금	43,200,000		
전국체육대회참가지원	<b>소 계</b>	<b>8,743,000</b>	시비보조금
	<b>사무관리비</b>	<b>100,000</b>	
	-일반수용비	100,000	
	<b>공공운영비</b>	<b>320,000</b>	
	-차량선박비	320,000	
	<b>행사운영비</b>	<b>198,000</b>	
	-행사운영지원	198,000	
	<b>국내여비</b>	<b>1,015,000</b>	
	-일비	175,000	
	-숙박료	490,000	
	-식비	350,000	
	<b>시책추진업무추진비</b>	<b>7,110,000</b>	
	-참가선수 등 관계자 간담회	930,000	
	-현지격려(음료구입 등)	180,000	
	-현지격려금(선수, 감독, 코치)	6,000,000	
	<b>행사실비보상금</b>	<b>0</b>	
	-현지격려금(선수, 감독, 코치)	0	

세부사업명	항 목	집 행 액	비 고
소년체전참가선수단지원	소 계	5,650,000	시비보조금
	사무관리비	0	
	-일반수용비	0	
	공공운영비	120,000	
	-차량선박비	120,000	
	행사운영비	130,000	
	-행사운영지원	130,000	
	국내여비	580,000	
	-일비	100,000	
	-숙박료	280,000	
	-식비	2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20,000	
	-참가선수 등 관계자 간담회	320,000	
-선수 및 지도자격려금	4,500,000		
시장기체육대회개최지원	소 계	190,786,821	시비보조금
	사무관리비	16,040,000	
	-상징제작	16,040,000	
	공공운영비	10,437,000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10,437,000	
	행사운영비	15,433,040	
	-트로피 및 메달 제작	15,433,04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6,000	
	-종목단체 간담회	246,000	
	단체보조금	148,630,781	
-종목별 지원	148,630,781		
의장기체육대회개최지원	소 계	98,053,850	시비보조금
	공공운영비	6,442,000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6,442,000	
	행사운영비	13,768,200	
	-시상비 제작(우승기, 트로피)	10,500,000	
	-대관임차료	3,268,200	
	업무추진비	682,800	
	-간담회 및 격려	682,800	
	단체보조금	77,160,850	
	-종목별 보조금 지원(우수종목1)	0	
-종목별 보조금 지원(우수종목2)	0		
-종목별 보조금 지원	77,160,850		
체육회장배체육대회개최지원	소 계	19,982,000	시비보조금
	단체보조금	19,982,000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	19,982,000	
생활체육동호인클럽육성지원	소 계	49,622,280	시비보조금
	공공운영비	5,500,000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5,500,000	
	행사운영비	8,546,700	
	-현수막 제작	800,000	
	-대관 임차료	7,746,7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종목단체 간담회	-	
단체보조금	35,575,580		
-종목별 보조금 지원	35,575,580		

세부사업명	항 목	집 행 액	비 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참가지원	<b>소 계</b>	<b>106,508,876</b>	시비보조금
	<b>사무관리비</b>	<b>17,400,000</b>	
	-단체복	17,200,000	
	-심사위원 수당	200,000	
	-기타수용비(하이패스 등)	0	
	<b>공공운영비</b>	<b>239,751</b>	
	-차량유류비	239,751	
	-차량유지관리비	0	
	<b>행사운영비</b>	<b>6,070,450</b>	
	-입장식(이벤트, 현수막 등) 및 행사운영 지원	486,200	
	-선수 보험료	1,637,250	
	-종목별 필승 현수막	1,562,000	
	-사전답사(만찬장)	145,000	
	-차량 렌탈비	1,240,000	
	-차량 렌탈비(버스임차)	1,000,000	
	<b>국내여비</b>	<b>5,471,080</b>	
	-일비	768,750	
	-숙박료	3,169,000	
	-식비	1,533,330	
	<b>시책추진업무추진비</b>	<b>12,378,700</b>	
	-선수 격려만찬	5,207,000	
	-대회참가선수 현지 격려(음료 등)	571,700	
	-현지격려금	6,300,000	
	-입장부 격려금	300,000	
	<b>단체보조금</b>	<b>64,948,895</b>	
	-교통비	7,229,645	
	-숙박비	4,490,000	
-급량비	17,869,600		
-용품비	33,532,900		
-운영비	1,826,750		
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	<b>소 계</b>	<b>130,423,100</b>	시비보조금
	<b>보수</b>	<b>67,750,000</b>	
	-광장체조교실(외부음 외 9개 읍면동)	54,750,000	
	-패밀리볼링	4,800,000	
	-건강마라톤	5,600,000	
	-리듬체조	2,600,000	
	<b>사무관리비</b>	<b>5,258,200</b>	
	-앵프대여(수리 등)	1,062,200	
	-용품구입비(테니스교실 등)	4,196,000	
	-심사위원 수당	0	
	<b>공공운영비</b>	<b>5,851,000</b>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5,851,000	
	<b>행사운영비</b>	<b>9,223,900</b>	
	-현수막(교실, 홍보)	3,237,000	
	-패밀리볼링(시설사용료)	4,800,000	
	-리듬체조(시설사용료)	334,200	
	-사무용품(수료증 제작)	852,700	
	<b>행사실비보상금</b>	<b>42,340,000</b>	
	-휴먼복 감사수당	42,340,000	
	-자문단 수당	0	

세부사업명	항 목	집 행 액	비 고
남양주시장기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	소 계	19,999,320	시비보조금
	단체보조금	19,999,320	
	-남양주시장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19,999,320	
남양주시태권도협회 태권도시범단운 영지원	소 계	97,521,050	시비보조금
	인건비	18,200,000	
	-보수	18,200,000	
	단체보조금	79,321,050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	79,321,050		
남양주시장기전국에코랜드먹골배 테니스대회	소 계	9,860,000	시비보조금
	단체보조금	9,860,000	
	-전국 에코랜드 먹골배 테니스 대회 개최지원	9,860,000	
남양주한강걷기대회개최지원	소 계	49,517,280	시비보조금
	단체보조금	49,517,280	
	-제 15회 남양주시 한강걷기대회 개최 지원	49,517,280	
생활체육종목활성화지원	소 계	172,068,347	시비보조금
	공공운영비	1,965,000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1,965,000	
	행사운영비	4,041,800	
	-현수막	0	
	-식전공연(사회자 등)	0	
	-대관료	1,241,800	
	-트로피	2,800,000	
	-대회운영 지원(의자 렌탈 등)	0	
	국내여비	600,000	
	-국내여비	120,000	
	-숙박료	280,000	
	-식비	2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84,300	
	-참가자 격려	1,184,300	
	단체보조금	164,277,247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144,801,947		
-여성스포츠대회	19,475,300		
남양주시체육회종목별 단체육성 지원	소 계	72,296,208	시비보조금
	단체보조금	72,296,208	
	-도체전 출전종목 육성(가입단체)	50,654,049	
	-도체전 출전종목 육성(미가입단체)	1,060,000	
-일반종목 육성(가입단체)	20,582,159		
경기도체육대회참가선수선발전 개최지원	소 계	38,242,550	체육진흥기금
	행사실비보상금	38,242,550	
	-종목별 단체보조금	38,242,550	
전문체육대회입상지원(경기도체육대 회,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소 계	52,111,000	체육진흥기금
	행사실비보상금	52,111,000	
	-전문체육대회 입상자지원	52,111,000	
시군생활체육회운영지원	소 계	12,000,000	국비보조금
	보수	12,000,000	
	-사무국장 지원수당	12,000,000	



세부사업명	항 목	집 행 액	비 고
신나는주말체육학교 운영	<b>소 계</b>	<b>51,482,000</b>	국비보조금
	<b>보수</b>	<b>24,360,000</b>	
	-생활체육프로그램 총괄담당 인건비	1,800,000	
	-학교안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사비	22,560,000	
	<b>사무관리비</b>	<b>0</b>	
	-심사위원 수당	0	
	-사무용품	0	
	<b>공공운영비</b>	<b>1,228,000</b>	
	-학교 안· 밖 보험료(주최자책임배상)	1,228,000	
	<b>행사운영비</b>	<b>25,894,000</b>	
	-학교 안 프로그램	3,568,000	
	-학교 밖 프로그램	22,326,000	
	<b>국내여비</b>	<b>0</b>	
	-현장점검 및 출장여비	0	
<b>시책추진업무추진비</b>	<b>0</b>		
-회의비	0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	<b>소 계</b>	<b>147,672,700</b>	도비보조금
	<b>단체보조금</b>	<b>147,672,700</b>	
	-배드민턴협회(초등생 배드민턴 교실)	23,999,700	
	-배드민턴협회(권역별 배드민턴대회)	20,000,000	
	-합기도협회(전국합기도대회)	20,448,000	
	-드론항공협회(달려라 드론레이싱)	17,553,000	
	-당구연맹(여성 당구인대상 프로그램)	13,500,000	
	-볼링협회(연령대최강전 및 센터대항전)	10,500,000	
	-진접읍체육회(청소년 풋살대회)	24,000,000	
	-태권도협회(유청소년 태권도대회)	17,672,000	
경기도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b>소 계</b>	<b>35,411,070</b>	도비보조금
	<b>보수</b>	<b>25,068,970</b>	
	-인턴수당	5,068,970	
	-매니저활동비	6,400,000	
	-강사수당	13,600,000	
	<b>행사운영비</b>	<b>10,342,100</b>	
	-현수막 등	396,000	
	-시설사용료	9,465,300	
-운영비(사무용품, 용품 등)	480,800		
경기도 생활체육동호회리그	<b>소 계</b>	<b>19,900,000</b>	도비보조금
	<b>인건비</b>	<b>8,280,000</b>	
	-매니저수당	3,000,000	
	-심판수당	3,840,000	
	-보조요원수당	1,440,000	
	<b>공공운영비</b>	<b>1,200,000</b>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1,200,000	
	<b>행사운영비</b>	<b>10,420,000</b>	
	-대관 임차료	9,000,000	
	-트로피	1,260,000	
	-현수막	160,000	
<b>여비</b>	<b>0</b>		
-활동여비	0		

세부사업명	항 목	집 행 액	비 고
경기시니어건강관리 프로젝트	<b>소 계</b>	<b>8,920,000</b>	도비보조금
	<b>인건비</b>	<b>6,720,000</b>	
	-강사수당	6,720,000	
	<b>행사운영비</b>	<b>2,200,000</b>	
	-용품비	1,200,000	
	-홍보 및 운영비	1,000,000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b>소 계</b>	<b>1,352,500</b>	도비보조금
	<b>사무관리비</b>	<b>1,352,500</b>	
	-시설사용료	300,000	
	-강사수당	400,000	
	-피복비	300,000	
	-보험료	12,500	
	-용품구입	340,000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	<b>소 계</b>	<b>147,468,325</b>	국도시비보조금
	<b>보수</b>	<b>146,660,425</b>	
	-기본급	122,484,340	
	-퇴직적립금	10,310,075	
	-4대보험 부담금	13,866,010	
	<b>행사운영비</b>	<b>807,900</b>	
-지도활동 보험료	807,90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b>소 계</b>	<b>157,053,650</b>	국도시비보조금
	<b>보수</b>	<b>156,295,150</b>	
	-기본급	129,762,100	
	-퇴직적립금	12,810,590	
	-4대보험 부담금	13,722,460	
	<b>행사운영비</b>	<b>758,500</b>	
-지도활동 보험료	758,500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b>소 계</b>	<b>10,208,400</b>	도시비보조금
	<b>보수</b>	<b>10,208,400</b>	
	-처우개선비	10,208,400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b>소 계</b>	<b>110,645,300</b>	도시교육경비 보조금
	<b>보수</b>	<b>95,491,100</b>	
	-사무보조 기본급(법정부담금 포함)	24,731,100	
	-연가보상비	0	
	-강사비	70,760,000	
	<b>사무관리비</b>	<b>219,600</b>	
	-사무용품비(문구료, 복사지등)	219,600	
	<b>공공운영비</b>	<b>792,000</b>	
	-보험료	792,000	
	<b>행사운영비</b>	<b>13,812,600</b>	
	-클럽 운영비	13,392,600	
	-도체육회 운영비(전산구축비)	420,000	
	<b>국내여비</b>	<b>330,000</b>	
-국내여비	330,000		

세부사업명	항 목	집 행 액	비 고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b>소 계</b>	<b>229,849,660</b>	시교육청비 보조금
	<b>보수</b>	<b>162,641,730</b>	
	-전임지도자 급여	76,353,600	
	-전임지도자 법정부담금	7,768,130	
	-전임지도자 초과근무수당	5,040,000	
	-강사수당	73,480,000	
	<b>사무관리비</b>	<b>19,083,050</b>	
	-사무용품비	504,350	
	-대관료	17,728,700	
	-위원회 참석수당	300,000	
	-회계감사비	550,000	
	<b>공공운영비</b>	<b>2,644,240</b>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2,644,240	
	<b>행사운영비</b>	<b>43,634,420</b>	
	-홍보비	1,654,000	
	-대회출전비	30,670,920	
	-용품구입비	11,309,500	
	<b>업무추진비</b>	<b>1,846,220</b>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46,220	
이사회비 사업	<b>소 계</b>	<b>140,808,280</b>	자체사업
	<b>보수</b>	<b>8,220,000</b>	
	-근속수당	8,220,000	
	<b>사무관리비</b>	<b>16,429,750</b>	
	-일반수용비	1,358,100	
	-이사회(정기, 임시)책자유인	3,029,400	
	-체육회장상 제작	4,280,000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600,000	
	-홍보비(간판, 홍보물 등)	3,322,250	
	-신문구독료	540,000	
	-임원단체복	3,300,000	
	<b>공공운영비</b>	<b>1,047,300</b>	
	-우편요금	47,300	
	-시·군체육회장단 회비납부	1,000,000	
	-임원등기 수수료	0	
	<b>행사운영비</b>	<b>74,306,530</b>	
	-이사 워크숍	33,991,380	
	-체육인의 밤	35,625,330	
	-임원단합대회	4,389,820	
	-임원활성화(분과별)	300,000	
	<b>여비</b>	<b>0</b>	
	-국내여비	0	
	<b>기관운영업무추진비</b>	<b>11,645,000</b>	
	-기관운영업무추진비(명절선물 등)	11,645,000	
	<b>시책추진업무추진비</b>	<b>15,204,800</b>	
	-체육회 시책추진 등	604,500	
	-체육회 시책추진 등(사무국) 등	1,456,600	
	-체육회 임원 간담회	13,143,700	

세부사업명	항 목	집 행 액	비 고
이사회비 사업	<b>기타보상금</b>	<b>7,820,000</b>	자체사업
	-이사 경조사비	6,820,000	
	-체육활동피해자위로보상	0	
	-종목단체 격려금	0	
	-파리올림픽선수격려금	1,000,000	
	<b>자산 및 물품취득비</b>	<b>6,134,900</b>	
	-에어컨 구입 등	6,134,900	
	<b>예치금</b>	<b>0</b>	
-이사회비적립금	0		
회원단체회비 사업	<b>소 계</b>	<b>55,971,230</b>	자체사업
	<b>사무관리비</b>	<b>5,089,220</b>	
	-사무운영비(문구, 현수막, 상장, 책자 등)	2,889,220	
	-각종위원회 수당(스포츠공정위원회 등)	2,200,000	
	<b>공공운영비</b>	<b>524,940</b>	
	-경기도체육회 사무국장 회비	500,000	
	-우편요금	24,940	
	-소송료	0	
	<b>행사운영비</b>	<b>34,270,570</b>	
	-총회, 간담회 개최 등	730,270	
	-워크숍 개최	33,476,700	
	-생활체육운영지원	63,600	
	<b>국내여비</b>	<b>400,000</b>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여비	400,000	
	<b>기관운영업무추진비</b>	<b>5,775,000</b>	
	-회원단체장 격려	5,775,000	
	<b>시책추진업무추진비</b>	<b>4,521,500</b>	
	-각종위원회 간담회(스포츠공정위원회 등)	2,869,000	
	-회원단체 격려	1,652,500	
	<b>기타보상금</b>	<b>5,390,000</b>	
-회원단체 경조사비	3,590,000		
-회원단체 격려금	1,800,000		
체육공나무 육성기금	<b>소 계</b>	<b>35,000,000</b>	자체사업
	<b>일반보상금</b>	<b>35,000,000</b>	
	-기타보상금	35,000,000	
G-스포츠클럽 종목별회비	<b>소 계</b>	<b>15,869,060</b>	자체사업
	<b>행사운영비</b>	<b>15,869,060</b>	
	-대회출전비	7,690,260	
	-용품구입비	8,178,800	
기부금 사업	<b>소 계</b>	<b>29,495,600</b>	기부금사업
	<b>행사운영비</b>	<b>15,729,000</b>	
	-생활체육 활성화대회 지원	2,000,000	
	-생활체육 활성화교실 지원	13,729,000	
	<b>단체보조금</b>	<b>13,766,600</b>	
	-남양주시 60대 축구 클럽리그전	4,766,600	
-문체부장관상다사랑합기도대회	9,000,000		

## 2024년도 남양주시체육회 이사회비 수입명세표

(단위 : 원)

연번	직 위	성 명	금 액	연번	직 위	성 명	금 액	연번	직 위	성 명	금 액
<b>총 계</b>				<b>161,500,000</b>							
<b>소 계</b>			<b>74,500,000</b>	<b>소 계</b>			<b>45,000,000</b>	<b>소 계</b>			<b>42,000,000</b>
1	회 장	윤성현	10,000,000	31	이사	최만부	1,500,000	61	이사	한예서	1,500,000
2	고문	김정률	1,500,000	32	*	김춘재	1,500,000	62	*	박준진	1,500,000
3	*	이보금	1,500,000	33	*	오한근	1,500,000	63	*	김우식	1,500,000
4	*	우영숙	1,500,000	34	*	이원근	1,500,000	64	*	양명계	1,500,000
5	*	최정자	1,500,000	35	*	이승욱	1,500,000	65	*	현부수	1,500,000
6	*	유후근	1,500,000	36	*	원유상	1,500,000	66	*	서창연	1,500,000
7	*	이덕삼	1,500,000	37	*	김상태	1,500,000	67	*	이기용	1,500,000
8	*	이홍균	1,500,000	38	*	이용복	1,500,000	68	*	김무근	1,500,000
9	*	최재근	1,500,000	39	*	박광천	1,500,000	69	*	박종면	1,500,000
10	*	유창재	1,500,000	40	*	이수원	1,500,000	70	*	어윤석	1,500,000
11	*	강병선	1,500,000	41	*	이혜정	1,500,000	71	*	안만규	1,500,000
12	*	이근구	1,500,000	42	*	조택연	1,500,000	72	*	서상철	1,500,000
13	*	김요실	1,500,000	43	*	윤용	1,500,000	73	*	김희진	1,500,000
14	*	이순명	1,500,000	44	*	정순교	1,500,000	74	*	김재영	1,500,000
15	부회장	박광서	3,000,000	45	*	김병환	1,500,000	75	*	원은주	1,500,000
16	*	최동교	3,000,000	46	*	현규진	1,500,000	76	*	성주희	1,500,000
17	*	손영희	3,000,000	47	*	오정휴	1,500,000	77	*	최상복	1,500,000
18	*	이진규	3,000,000	48	*	김인태	1,500,000	78	*	성점자	1,500,000
19	*	장석호	3,000,000	49	*	조재욱	1,500,000	79	*	이진상	1,500,000
20	*	여창원	3,000,000	50	*	최병권	1,500,000	80	*	박현규	1,500,000
21	*	장 경	3,000,000	51	*	이왕모	1,500,000	81	*	윤보경	1,500,000
22	*	이기국	3,000,000	52	*	최대집	1,500,000	82	*	이태식	1,500,000
23	*	김신애	3,000,000	53	*	우근섭	1,500,000	83	*	이용자	1,500,000
24	*	최재근	3,000,000	54	*	이희권	1,500,000	84	*	조용국	1,500,000
25	*	윤훈철	3,000,000	55	*	최승진	1,500,000	85	*	김성태	1,500,000
26	*	하기주	3,000,000	56	*	유병천	1,500,000	86	*	유소연	1,500,000
27	*	김윤원	3,000,000	57	*	한근환	1,500,000	87	*	이진택	1,500,000
28	*	강신관	3,000,000	58	*	홍성학	1,500,000	88	*	선효원	1,500,000
29	이사	이주영	1,500,000	59	*	이낙구	1,500,000	-	-	-	-
30	*	유길문	1,500,000	60	*	이영선	1,500,000	-	-	-	-

○ 미납부 현황 : 2명(이동준, 김재열고문)

## 2024년도 회원단체회비 수입명세표

(단위 : 원)

연 번	종 목	금 액	연 번	종 목	금 액
<b>총 계</b>			<b>55,720,000</b>		
<b>소 계</b>		<b>28,360,000</b>	<b>소 계</b>		<b>27,360,000</b>
1	우슈(23, 24년도)	1,360,000	29	사격	1,000,000
2	테니스	1,000,000	30	축구	1,000,000
3	볼링	1,000,000	31	국학기공	1,000,000
4	궁도	1,000,000	32	소프트테니스	1,000,000
5	견기	1,000,000	33	복싱	1,000,000
6	산악	1,000,000	34	해동검도	1,000,000
7	패러글라이딩	1,000,000	35	당구	1,000,000
8	탁구	1,000,000	36	피구	1,000,000
9	태권도	1,000,000	37	빙상	1,000,000
10	그라운드골프	1,000,000	38	체조	1,000,000
11	유도	1,000,000	39	수중핀수영	1,000,000
12	족구	1,000,000	40	다산1동체육회 (23, 24년도)	1,360,000
13	배드민턴	1,000,000	41	다산2동체육회	1,000,000
14	골프	1,000,000	42	진접읍체육회	1,000,000
15	배구	1,000,000	43	수동면체육회	1,000,000
16	댄스스포츠	1,000,000	44	화도읍체육회	1,000,000
17	킥복싱	1,000,000	45	오남읍체육회	1,000,000
18	파크골프	1,000,000	46	평내동체육회	1,000,000
19	합기도	1,000,000	47	별내면체육회	1,000,000
20	야구소프트볼	1,000,000	48	별내동체육회	1,000,000
21	보디빌딩	1,000,000	49	조안면체육회	1,000,000
22	검도	1,000,000	50	와부읍체육회	1,000,000
23	주짓수	1,000,000	51	진건읍체육회	1,000,000
24	드론항공	1,000,000	52	퇴계원읍체육회	1,000,000
25	육상	1,000,000	53	양정동체육회	1,000,000
26	농구	1,000,000	54	금곡동체육회	1,000,000
27	게이트볼	1,000,000	55	호평동체육회	1,000,000
28	승마	1,000,000	-	-	-

○ 미납부 현황 : 2개 회원단체 2,000천원

구분	단체명	비고
2024년 미납	자전거, 수영	

\* 관리단체 제외(5개) : 밸리댄스,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바둑, 씨름, 스키

## 2024년도 G-스포츠클럽운영회비 수입명세표

(단위 : 원)

연번	종목	금액	연번	종목	금액
<b>총 계</b>					<b>33,100,000</b>
<b>소 계</b>		<b>16,500,000</b>	<b>소 계</b>		<b>16,600,000</b>
1	볼링(강다연)	1,000,000	26	배드민턴1(신예하)	400,000
2	볼링(김소희)	1,000,000	27	배드민턴1(권민성)	100,000
3	볼링(윤태준)	1,000,000	28	배드민턴1(김해리)	1,100,000
4	볼링(전은겸)	300,000	29	배드민턴1(전승우)	200,000
5	볼링(유주원)	300,000	30	배드민턴2(김소희)	900,000
6	볼링(이상원)	300,000	31	배드민턴2(정수아)	900,000
7	볼링(김현아)	300,000	32	배드민턴2(이채연)	900,000
8	볼링(최영하)	300,000	33	배드민턴2(한서연)	400,000
9	볼링(남현우)	100,000	34	배드민턴2(백승주)	800,000
10	볼링(문성훈)	100,000	35	배드민턴2(김한희)	300,000
11	수영(유현서)	900,000	36	배드민턴2(김사랑)	600,000
12	수영(이혜린)	800,000	37	배드민턴2(유다인)	900,000
13	수영(이세이)	1,100,000	38	배드민턴2(김태희)	600,000
14	수영(고예린)	600,000	39	배드민턴2(김수빈)	900,000
15	수영(김연준)	300,000	40	배드민턴3(이성현)	900,000
16	수영(이시후)	700,000	41	배드민턴3(김수환)	1,100,000
17	수영(이승현)	300,000	42	배드민턴3(신소영)	1,100,000
18	배드민턴1(최규원)	1,100,000	43	배드민턴3(박서연)	1,100,000
19	배드민턴1(한지후)	900,000	44	배드민턴3(나현수)	200,000
20	배드민턴1(최규빈)	1,100,000	45	배드민턴3(최규영)	200,000
21	배드민턴1(김민준)	900,000	46	배드민턴3(한상훈)	900,000
22	배드민턴1(박지오)	900,000	47	배드민턴3(김한울)	300,000
23	배드민턴1(이채훈)	900,000	48	배드민턴3(송다원)	900,000
24	배드민턴1(한예준)	900,000	49	배드민턴3(홍수지)	900,000
25	배드민턴1(신예안)	400,000	-	-	-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 **심의 · 의결**



## 부의안

의안번호	제4호	안전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건 명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 의결주문**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부의근거**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2조 제1호

**3. 제안사유**

상위단체 정관을 준용하여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제23조(임원)

- 부 회 장 : 9명 이하 → 15명 이하
- 이사정원 : 26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 이상 70명 이하
- 감사정원 : 2명 → 3명

제57조(명예회장 및 고문)

- 선임 절차 : 명예회장 총회 추대, 고문 이사회 의결 위촉

**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 1. 제안이유

경기도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1) 체육회 회원단체의 종류 : 회원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안 제6조)
  - 읍·면·동체육회 :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 (안 제6조 제1항 제2호)
- 2) 관리단체 지정 시, 경기도종목단체와 사전 협의 (안 제9조 제1항)
- 3) 총회 및 이사회 의결정족수, 가부동수일 때 부결 내용 삭제 (안 제15조 및 제20조)
- 4) 임원구성 개정
  - 부회장 정원 : 9명 이하 → 15명 이하 (안 제23조 제1항 제2호)
  - 이사 정원 : 26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 이상 70명 이하 (안 제23조 제1항 제3호)
  - 감사 정원 : 2명 → 3명 (안 제23조 제1항 제4호)
- 5) 임원의 결격사유 (안 제30조)
  - 결격사유 명확화
- 6) 회계감사 (안 제47조 제1항)
  - 내부 감사 : 총회 선임된 감사로 매년 시행
  - 외부 감사 : 독립적 외부 회계감사 연 1회 실시
- 7) 명예회장 및 고문 신설
  - 명예회장 : 총회추대 (안 제57조 제1항)
  - 고문 :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위촉 (안 제57조 제2항)

## 3.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 “별첨1 참조”

##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2 참조”

## 5. 남양주시체육회 정관(전문) : “별첨3 참조”

## 【별첨1】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중, “체육회의 회원단체는 읍·면·동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구성하며,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를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되는 체육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1항 제2호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조문추가)정 한다.

제1항 중, “다만,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단체가 소속된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하며, 읍·면·동 체육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읍·면·동장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조문추가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중, “정회원단체 또는 준회원”를 “체육회 정회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항 중, “3일전까지”를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제목 “(총회의 소집)”을 “(총회의 소집 등)” 으로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삭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 한다.

제19조 제목 “(이사회의 소집)”을 “(이사회의 소집 등)” 으로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0조 중, “다만, 가부동수일 때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제2호 중, “9인”를 “15인”로 한다.

제1항 제3호 중, “26명 이상 50명”를 “15명 이상 70명”로 한다.

제1항 제4호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항 중, “선거일 결정과”를 “체육회는”으로 한다.

제4항 제2호 중,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26명”을 “15명”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중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이면 임기와 연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무국장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3. 감사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당연직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평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중, “종목단체를”을 “읍·면·동 소재의 동호인 클럽”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호 중, “기부금 및 찬조금”을 “기부금, 찬조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하고, “남양주시”를 “남양주시장”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중,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을 “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독립적인 외부회계 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항 중,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를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7조 “본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조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사무국
입 안 자	담 당 국 장 직위 · 성명	사무국장 이 인 철
	담 당 자 직위 · 성명	총무팀장 강 수 연

【별첨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제1조(근거 및 명칭)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2조 ~ 제5조 (생략)	제2조 ~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체육회의 <u>회원단체는 읍·면·동체</u> <u>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구성하며, 정</u> <u>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u> <u>한다.</u>	① ----- <u>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u> <u>체가 되는 체육단체의 종류는 다음</u> <u>각 호와 같다.</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읍·면·동체육회 : 체육회의 <u>인가</u> 를 받아 설립된 체육회	2. 읍·면·동체육회 : ----- <u>승인</u> 을 -- ----- <u>단체</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제7조 ~ 제8조 (생략)</p> <p>제9조(관리단체의 지정)</p> <p>① <u>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u></p>	<p>제7조 ~ 제8조 (현행과 같음)</p> <p>제9조(관리단체의 지정)</p> <p>① ----- ----- ----- -----<u>다만,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단체가 소속된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하며, 읍·면·동체육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의 설립을 승인한 읍·면·동장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u></p>
<p>제10조 (생략)</p> <p>제10조의 2 (회원단체의 강등·제명)</p> <p>① <u>정회원단체 또는 준회원단체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u></p>	<p>제10조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 2 (회원단체의 강등·제명)</p> <p>① <u>체육회의 정회원----- ----- -----<u>적합하지 않다고</u>----- ----- ----- -- <u>다만, 이 경우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인 경우 미리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u></u></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제23조(임원)</p> <p>① (생략)</p> <p>    1. (생략)</p> <p>    2. 부회장 <u>9명</u> 이하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p> <p>    3. 이사 <u>26명</u> 이상 <u>50명</u>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p> <p>    4. 감사 <u>2명</u></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24조(회장의 선출)</p> <p>① ~ ③ (생략)</p> <p>④ <u>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    1. (생략)</p> <p>    2 <u>선거운영위원회</u> 위원은 이사회 <u>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7조에 의한 해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26명 미만이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u></p> <p>    3. ~ 4. (생략)</p> <p>    ⑤ ~ ⑭ (생략)</p> <p>제25조 ~ 제28조 (생략)</p>	<p>제23조(임원)</p> <p>① (현행과 같음)</p> <p>    1. (현행과 같음)</p> <p>    2. --- <u>15명</u> 이하 (----- ----- -----) 3. -- <u>15명</u> -- <u>70명</u> --( ----- -----) 4. -- <u>3명</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회장의 선출)</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체육회는</u> ----- ----- ----- ----- -----</p> <p>    1. (현행과 같음)</p> <p>    2 ----- ----- -----<u>위촉한다.</u> -----<u>이사의 재적수가</u> <u>15명 미만이 되거나, 임기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u></p> <p>    3. ~ 4. (현행과 같음)</p> <p>    ⑤ ~ ⑭ (현행과 같음)</p> <p>제25조~ 제28조 (현행과 같음)</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제29조(임원의 임기)</p> <p>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u>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중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이면 임기와 연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u></p> <p>1. (신설)</p> <p>2. (신설)</p> <p>3. (신설)</p> <p>4. (신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p> <p>③ ~ ⑪ (생략)</p>	<p>제29조(임원의 임기)</p> <p>① ----- --<u>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p>1. <u>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2. <u>사무국장은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무국장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u></p> <p>3. <u>감사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4. <u>당연직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② ----- --( <u>삭 제</u> ) ----- -----<u>의결에</u>----- -----</p> <p>③ ~ ⑪ (현행과 같음)</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p> <p>① (생략)</p> <p>1. ~ 2. (생략)</p> <p>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 그 형이 확정된 사람 (<u>신설</u>)</p> <p>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u>신설</u>)</p> <p>4의 2. (<u>신설</u>)</p> <p>4의 3. (<u>신설</u>)</p>	<p>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p> <p>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u>(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u></p> <p>4. ----- ----- ----- <u>(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u></p> <p><u>4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u></p> <p><u>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p> <p><u>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u></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경기도체육회 이사회가 <u>체육회를</u>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u>체육회의</u>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6. ----- <u>회원단체(회원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u> 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u>해당 회원단체의</u> -----
제31조 ~ 제34조 (생략)	제31조 ~ 제34조 (현행과 같음)
제35조(읍·면·동체육회 조직 및 구성)	제35조(읍·면·동체육회 조직 및 구성)
① <u>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읍·면·동 체육회는 해당 읍·면·동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u>	① <u>읍·면·동체육회는 회원을 둘 수 있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 ~ 제40조 (생략)	제36조 ~ 제40조 (현행과 같음)
제41조 (생략)	제41조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 <u>신설</u> )	3. ----- <u>후원금</u>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2조 ~ 제45조 (생략)	제42조 ~ 제45조 (현행과 같음)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③ <u>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u>남양주시</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③ ----- <u>3개월</u> ----- ----- ----- <u>남양주시장</u>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제47조(회계감사 등)</p> <p>① 체육회는 <u>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48조 (생략)</p> <p>제49조(사무국)</p> <p>① ~ ② (생략)</p> <p>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 <u>의 동의를 거쳐</u> 회장이 <u>임면</u>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50조 ~ 제56조 (생략)</p> <p>제57조 (신설)</p> <p>1. (신설)</p> <p>2.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제3조 (생략)</p>	<p>제47조(회계감사 등)</p> <p>① ----- <u>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독립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8조 (현행과 같음)</p> <p>제49조(사무국)</p> <p>① ~ ② (생략)</p> <p>③ ----- ----- -----<u>의결을</u>----- <u>임명</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50조 ~ 제56조 (현행과 같음)</p> <p>제57조(명예회장 및 고문)</p> <p><u>본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을 둘 수 있다.</u></p> <p>1. <u>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u></p> <p>2. <u>고문은 이사회 <u>의결로</u> 회장이 위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제3조 (현행과 같음)</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생략)</p> <p>제1조~ 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신설)</u></p> <p><u>제1조(시행일) (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현행과 같음)</p> <p>제1조~ 제2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5. 02. 00.)</u></p> <p><u>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u>  <u>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장의 승인을</u>  <u>받은 날부터 시행한다.</u></p>

**【별첨3】**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정 2021. 04. 16.

개정 2022. 07. 28.

남양주시 승인 2022. 09. 22.

개정 2025. 02. 00.

남양주시 승인 2025.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6조 및 제35조에 따른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이다.

② 이 법인의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체육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Namyangju City Sports Council’(약칭 NSC)이라 한다.

**제2조(목적)** ‘남양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남양주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체육회의 사무소는 남양주시에 둔다.

**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2.7.28.)

1.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남양주시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경기도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경기도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남양주시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남양주시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6. 남양주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남양주시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남양주시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1.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남양주시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제공이익의 수혜자)** ① 체육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를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성별 또는 그 밖에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28.)

## **제2장 조 직 (제목개정 2022.7.28)**

**제6조(조직)** ①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되는 체육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8., 2025.02.00)

1. “회원종목단체”: 남양주시에서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신설 2022.7.28)

2. “읍·면·동체육회”: 체육회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 (개정 2022.7.28., 2025.02.00)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8)

1.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8)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8)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8.)

③ (삭제 2022.7.28)

④ 제2항의 구분에 따른 회원의 자격요건은 체육단체의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7.28.)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과 같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남양주시 읍·면·동체육회(이하 “회원단체”라 한다)의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28.)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가 소속된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하며, 읍·면·동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의 설립을 승인한 읍·면·동장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1. 체육회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때
2. 60일 이상의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개정 2022.7.28.)
3.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와의 분쟁
4. 해당 회원종목단체 내의 각종 분쟁 (개정 2022.7.28.)
5. 재정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개정 2022.7.28.)

② 체육회가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된 날로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개정 2022.7.28.)

④ 관리단체로 지정된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거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⑤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⑥ 경기도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에 따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되지 않은 종목이 체육회의 회원이 되고자할 경우에는 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제10조의2(회원단체의 강등·제명)** ① 체육회의 정회원단체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경기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인 경우 미리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7.28., 2025.02.00)

②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가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28.)

④ 이 정관 이외에 체육회의 회원단체에 대한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 제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구성)** ① 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0.)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삭제 2022.7.28.)
4. 임원의 선임(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 사항 (개정 2022.7.28.)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복수의 감사가 연명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중 연장자 또는 감사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2.7.28.)

**제14조(총회의 소집 등)** ① 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02.00)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안건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안건이어야 하며, 정당한 안건으로 의장이 인정할 때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제7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28.)

⑦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2.7.28.)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022.7.28.)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28.)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7.28.)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강등 및 제명 (개정 2022.7.28.)
9.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2.7.28.)

**제19조(이사회 소집 등)**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02.00)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

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7.28.)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28.)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 제5장 임원

**제23조(임원)**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2.7.28.)

1. 회장 1명
2. 부회장 15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3. 이사 15명 이상 7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4. 감사 3명 (개정 2022.7.28., 2025.02.00)

② 육회의 임원은 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이사의 수의 상한은 체육회 총회 의결로 2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1.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장 (개정 2022.7.28.)

2.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2. 읍·면·동의 인구 규모

3. 회장선거 직전에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제2조제1호의 대회에서 개최된 종목 (개정 2022.7.28.)

④ 체육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재적수가 15명 미만인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2025.02.00)

3. 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7.28.)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전 30일 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3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부터 7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22.7.28.)

⑧ 회장이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6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⑩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주무부처와 합의한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⑪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 가능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⑬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7.28.)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7.28.)

⑭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액 및 반환 조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체육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 등 체육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의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28.)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남은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7.28.)

③ 회장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제27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③ 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8.)

1. (삭제 2022.7.28.)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8.)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8.)
  4. 교육계인사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 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호에서 이동 2022.7.28.)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는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에서 회원종목 단체 1명과 읍·면·동체육회 1명,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22.7.28.)
  -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그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 ⑧ 경기도체육회가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회장의 인준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의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⑨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정한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22.7.28.)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  
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7.28.)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체육회(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의 회원단체, 시·도 및 시·  
군·구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2.7.28.)

⑦ 임원이 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체육회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  
된다. (개정 2022.7.28.)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28., 2025.02.00)

1.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02.00.)
2. 사무국장은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무국장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02.00.)
3. 감사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02.00.)
4. 당연직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와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02.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2.7.28., 2025.02.00)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  
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7.28.)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  
합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바로 다음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  
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  
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 2022.7.28.)

-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 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단, 사무국장은 해당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2.7.28.)
-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28.)
- ⑩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2.7.28.)
- ⑪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2.7.28.)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7.28.)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 4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

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5.02.0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5.02.00)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2.7.28.)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7.28.)

6. 경기도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022.7.28., 2025.02.00)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개정 2022.7.28.)

③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경기도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 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

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 2022.7.28.)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 제6장 회원단체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회원인 스포츠클럽 및 등록팀(학생부·일반부)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은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34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다른 시·군·구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제35조(읍·면·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읍·면·동체육회는 회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7.28., 2025.02.00)

② 읍·면·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삭제 2022.7.28.)

④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36조(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읍·면·동체육회의 회장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읍·면·동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읍·면·동체육회의 회장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

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체육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2.7.28.)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의 정관 및 규정 관리 (개정 2022.7.28.)

2.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개정 2022.7.28.)

3. 체육회의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개정 2022.7.28.)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 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7.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2.7.28.)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개정 2022.7.28.)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2.7.28.)

⑤ 이 밖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가 정한다.

**제41조(재원)** 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8.)

1. 회원단체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찬조금 및 후원금 (개정 2025.02.00.)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2.7.28.)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남양주시의 조례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7.28.)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2.7.28.)
2. 체육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22.7.28.)

**제45조(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남양주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양주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체육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독립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② 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③ 체육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 제48조(경기도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 ② 경기도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을 조사·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 ③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가 경기도체육회의 정관, 각종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 ④ 경기도체육회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 ⑤ 제4항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대한체육회의 ‘감사규정’ 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제9장 사무국

- 제49조(사무국)** ① 체육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 ④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개정 2022.7.28.)
-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7.28.)

**제50조(사무국 직제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남양주시장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재산은 남양주시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제52조(정관의 제정·개정)**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회원시·군체육회 규정(이하 “시·군체육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④ 체육회는 정관을 개정하고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7.28.)

**제53조(규정의 제정·개정)** ① 체육회의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한다. (개정 2022.7.28.)

② (삭제 2022.7.28.)

③ 체육회는 정관 및 규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경기도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은 이 정관에 우선하며, 이 정관과 경기도체육회의 시·군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경기도체육회의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정관, 시·군체육회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28.)

**제55조(제한사항)** 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정관, 각종 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1. 경기도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의결할 권리
2.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선거인 후보자 추천 권리
3. 경기도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4. 경기도체육회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5. 경기도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6. 경기도체육회 재정 지원 (개정 2022.7.28.)

7. 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

8. 국제대회 유치

**제56조(경영공시)** ①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② 제1항의 게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밖에 체육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7.28.)

**제57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본조 신설 2025.02.00.]

##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체육회 승인을 거쳐,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 조(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의 승계 등)** 설립 등기한 체육회는 법인설립 이전 ‘남양주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을 포괄 승계하며, 법인설립시 이전 ‘남양주시체육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3 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전 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체육회의 임·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1항」에 따른 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하고 임기의 만료일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구)남양주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체육회의 임원(당연직 공무원 및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의 연임횟수에는 (구)남양주시체육회 및 (구)남양주시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횟수에는 (구)남양주시경기단체와 (구)남양주시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연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 칙(개정 2022. 7.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9조제10항 및 제11항 개정정관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원이 되려는 자의 연임 횟수 산정에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전 누적된 임원 재임 횟수 및 연임 횟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 칙(개정2025. 02. 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안)**

## **심의 · 의결**

## 부의안

의안번호	제5호	안전 종류	☑ 의결사항 □ 보고사항	
건 명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안)	제 안 자	사무국장	
<p>1. 의결주문</p> <p style="padding-left: 40px;">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p> <p>2. 부의근거</p> <p style="padding-left: 40px;">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2조 제4호</p> <p>3. 제안사유</p> <p style="padding-left: 40px;">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 권한을 체육회장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남양주시체육회 운영을 하고자 함.</p> <p>4.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 선임 :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li> <li>- 임원 선임 권한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절차 : 총회 의결로 체육회장에게 권한 위임.</li> <li>· 위임기한 :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전까지</li> </ul> </li> <li style="padding-left: 40px;">* 추후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 보고</li> <li>- 임 기 : 선임 시부터 ~ 2027년 정기총회 전날까지</li> </ul> <p>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p>				

##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안)

### 1 관련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임원의 선임(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27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 2 임원선임 권한 위임

○ 위임절차 : 총회 의결로 체육회장에게 권한 위임

○ 위임기한 :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전까지

\* 추후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 보고

○ 임 기 : 선임 시부터 ~ 2027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 **남양주시체육회 감사 선임(안)**

## **심의 · 의결**



## 부의안

의안번호	제6호	안전 종류	☑ 의결사항 □ 보고사항	
건 명	남양주시체육회 감사 선임(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 의결주문**

남양주시체육회 감사 선임(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부의근거**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2조 제4호

**3. 제안사유**

남양주시체육회 감사 선임을 통하여 청렴한 남양주시체육회 운영을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선출방법 : 총회에서 선임
- 인 원 : 3명(회계감사 1명, 행정감사 2명)  
\* 행정감사의 경우 종목단체장 중 1명, 읍면동체육회장 중 1명
- 사 유 : 임기만료
- 임 기 : 선임 시부터 ~ 2027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 남양주시체육회 감사 선임(안)

### 1 관련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27조(임원의 선임)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는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에서 회원종목단체 1명과 읍·면·동체육회 1명,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감사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개 요

○ 감사현황 : 3명

연번	사진	직급	성명	자격사항	비고
1		회계감사	김상운	· 現 태경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2		행정감사	장성민	· 現 다산2동 체육회장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3		행정감사	정재훈	· 現 남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회원종목단체 대의원

○ 임 기 : 2023. 2. 16. ~ 2025. 2. 28.까지

### 3 선임계획

○ 선임방법 : 총회 선임 \* 연임가능

○ 인 원 : 총 3명(회계감사 1명, 행정감사 2명)

○ 임 기 : 2025. 3. 1. ~ 2027년 정기총회 개최일 까지(2년)

# MEMO

---

---

# MEMO

---

---